

# “법정교육관련 개정법령”

## 에너지이용합리화법

제88조 (교육)

-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
  - ②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조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
  - ③ 에너지관리대상자,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조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
  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
- [전문개정 2003 12 30]

##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

제50조 (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)

-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조종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·기간·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12와 같다 <개정 2004 7 12>
-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조종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<개정 2004 7 12>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

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
[전문개정 1999 8 19]

부칙 (제239호, 2004 7 12)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  - ② (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의 교육에 관한 특례) 이 규칙 시행 당시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조종자로 등록 또는 선임된 자로서 계속하여 동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조종자로 종사하는 자는 제50조제1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
  - ③ (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) 에너지관리공단 시공업자단체·전국보일러설비협회 및 한국열관리사협회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도 하반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
- [별표 12]  
<신설 2004 7 12>  
(신고)  
1. 난방시공업제1종기술자과정 등에 대한 교육과

목 교육수수료 및 교육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

2. 시공업의 기술인력은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의 기술자로 최초로 등록된 날부터, 검사대상기조종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조종자로 최초로 선임구조 및 기종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(단) 날부터 6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

3.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교육과정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,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

4. 위 교육과정 중 난방시공업제1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난방시공업제2종 제3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, 중 대형보일러조종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형보일러 압력용기조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

5. 산업자원부장관은 제도의 변경, 기술의 발달 등 안전관리환경의 변화로 효율향상을 위하여 추가로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의 기관·기간·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여야 한다

##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

제22조 (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)

-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·기간·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3의2와 같다
-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
- ③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

[별표 3의2]  
<신설 2004 7 12>  
(신고)

- 1. 에너지관리자기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(제22조제1항 관련)

교육과정	교육기간	교육대상자	교육기관
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	1일	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신고된 자	에너지관리공단

- 하여 고시한다
- 2. 에너지관리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최초로 신고된 연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
- 3. 에너지관리자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다시 에너지관리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

###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법정교육 과정

- ▶ **교육대상자**  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8조에 의하여 현재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로 채용된 자.
- ▶ **중대형보일러 조종자 과정**  
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신규 선임된 자로 보일러 용량이 1t/h(난방용의 경우에는 5t/h)를 초과하는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조종자  
② 검사대상기기의 구조 및 기종이 변경되어 조종자로 선임된 자
- ▶ **소형보일러·압력용기 조종자 과정**  
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신규 선임된 자로 제1호기종의 대상 보일러 이외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조종자  
② 검사대상기기의 구조 및 기종이 변경되어 조종자로 선임된 자



열관리사협회보 광고문의  
T.2679-6343



乙酉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

2005년도부터는 본 학원이 열관리사협회 지정교육기관으로 흡수식냉난방기시설관리사와 지역난방설비관리사 (2005년 국가공인자격으로 승격 예정)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!!! (위탁교육)

### 흡수식냉난방기시설관리사 제51회 교육안내

(수료와 동시, 민간자격협회에서 인증하는 인증서와 열관리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치른 후 자격증 수여)

- 개강일자 : 2005년 1월 17일(2005년 1월 3일부터 선착순 모집)
- 수 강 료 : 250,000원(온라인접수 가능) 단, 보일러·열관리·공조냉동 자격증 소지자는 수강료 200,000원(교육 7시간 면제)
- 교육기간 : 2005년 1월 17일 ~ 2005년 2월 21일(총 32시간, 월.수.금반/화.목.토반, 주야시행)
- 협회시험일 : 2005년 2월 21일(월)
- 응시자격 : (사)한국열관리사협회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필기/실기(총32시간)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함

- 보일러기능장  
필기시험 : 2005년 4월 3일  
실기시험 : 2005년 5월 21일 ~ 6월 5일
- 보일러산업기사/공조냉동기계(산업)기사/가스(산업)기사  
필기시험 : 2005년 3월 6일  
실기시험 : 2005년 4월 30일 ~ 5월 14일

- 보일러취급/시공기능사/가스기능사  
필기시험 : 2005년 1월 30일  
실기시험 : 2005년 3월 12일 ~ 3월 27일
-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
필기시험 : 2005년 4월 3일  
실기시험 : 2005년 5월 21일 ~ 6월 5일
- 상기과목은 현재 교육중(단, 보일러기능장 보류)

고용보험 가입 실적자

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

직업능력개발훈련(재직자)

현재 상담 및 모집 중

2003년도 대한민국 우수직업훈련기관, (사)한국열관리사협회 지정 교육기관

35년전통  
한국최초승인

# 제일열관리(냉동)기술학원

(02)762-8292-3 www.jeilhra.co.kr